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445호

3)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4)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5) 추경예산 편성 사유**

-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을 맞춰 향후 원활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증액 추경하고자 함
- 사업완료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 추경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추경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

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727억원 대비 1,714억원(15.9%)  
이 증가한 1조 2,441억원으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액(A)	2016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계	1,244,185	1,072,744	171,441	15.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44,185	1,072,744	171,441	15.9

## 나. 세출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  
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60억 20백만원 대비 342억 22백만  
원(5.2%)이 증액된 6,902억 42백만원이 편성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77억 40백만원 대비  
342억 22백만원(5.7%)이 증액된 6,319억 62백만원으로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억 80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정예산 359억원으로 편성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액(A)	2016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계	690,242	656,020	34,222	5.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31,962	597,740	34,222	5.7
교통사업특별회계	22,380	22,380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900	35,900	-	-

## II.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가. 세입예산안

□ **기정예산 1조 727억원 대비 1,714억원(15.9%)이 증가한 1조 2,4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12억원 감추경
- 도시철도매출공채 '16년 초과 매출 예상분 394억원 증액 추경
- '15년 공채 초과 매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8억원 증액 추경
-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기타회계전입금 354억원 증액 추경

【2016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1회 추경예산액(A)	2016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계	1,244,185	1,072,744	171,441	15.9
공공예금이자수입	1,613	1,613	-	-
그외수입	2,619	2,619	-	-
국고보조금	100,080	101,258	△1,178	△1.2
금융기관채	141,700	141,700	-	-
매출공채	703,000	663,600	39,400	5.93
순세계잉여금	125,713	27,894	97,819	350.7
기타회계전입금	169,460	134,060	35,400	26.4

#### 나. 세출예산안

□ **기정예산 5,977억원 40백만원 대비 342억 22백만원(5.7%)이 증가한 6,319억원 6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은 시비 부담비율 60% 미충족에 따른 국비 675억원 미교부로 최소한의 공사비 354억원을 증액 추정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은 과다 편성된 국고보조금 감추경에 따른 11억 78백만원 감추경 계상

**【2016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1회 추경예산액(A)	2016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계	631,962	597,740	34,222	5.7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49,698	214,298	35,400	16.5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7,880	7,880	-	-
지하철 3호선 여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50	50	-	-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지반침하 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	170	170	-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64,831	66,009	△1,178	△1.8
신림선 경전철 건설	22,074	22,074	-	-
면목선 경전철 건설	60	60	-	-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203	203	-	-
재무활동	275,345	275,345	-	-
행정운영경비	11,182	11,182	-	-
예 비 비	469	469	-	-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 Ⅲ. 검토 의견

#### 1. 총괄

-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727억원 대비 1,714억원(15.9%)이 증가한 1조 2,441억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6,560억 20백만원 대비 342억원(5.2%)이 증가한 6,902억 42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727억 44백만원 대비 1,714억 41백만원(15.9%)이 증가한 1조 2,441억 8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5,977억 40백만원 대비 342억 22백만원(5.7%)이 증가한 6,319억원 62백만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 계상내역이 없음

#### 2. 회계별 검토의견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27억원 대비 1,714억원(15.9%)이 증가한 1조 2,441억원이며,

세입예산안의 변동내역은 4건으로

-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건설 12억 78백만원 감액
- 도시철도 매출공채 '16년 세입 대비 초과 매출분 394억원 증액
- '15년 공채 초과 매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8억원 증액
- 기타회계전입금 354억원 증액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977억 40백만원) 대비 5.7%(342억원) 증가한 6,319억원 6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변동내역은 2건으로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건설 354억원 증액되었고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국고보조금 12억원 감액됨

**※ 증액 사업 내용**

**<세입예산>**

- 도시철도 매출공채 (394억원)
- 순세계잉여금 (978억 19백만원)

**<세출예산>**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건설 (354억원)

**※ 감액 사업 내용**

**<세입예산>**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국고보조금 (11억 78백만원)

**<세출예산>**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국비 (11억 78백만원)

###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별 설명서 p.481)

- 동 사업은 송파·강동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하철 9호선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6년도 기정예산 2,142억 9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매칭비율(국비:시비=40:60) 충족을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의 요청<sup>1)</sup>에 따라 35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개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구간	개화~신논현	신논현~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보훈병원
노선연장	L=27.7km	L=4.5km	L=9.5km
정거장	총25개/환승6개	총5개/환승2개	총8개/환승2개
총사업비	3조 5,688억원 (국비 1,968억원) (시비 2,952억원) (민간 6,631억원)	4,829억원 (국비 1,932억원) (시비 2,897억원)	1조4,705억 11백만원 (국비 5,882억 4백만원) (시비 8,823억 7백만원)
사업기간	2001년 ~ 2010년	2007년 ~ 2015년	2009년 ~ 2018년

- 동 사업은 2013년 이후 급격한 예산편성 부족으로 국비매칭 비율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공정률이 당초 계획대비 72.8%에 불과하고 당초 사업기간이 2007년~2015년<sup>2)</sup>에서 2007년~2018년<sup>3)</sup>으로 연장됨

1) “서울도시철도 9호선(2-2단계) 건설사업” 지방비 확보 촉구, 광역도시철도과-3567(2016.10.13)

2)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요청, 도시철도계획부-7699(2015.9.7.)

3)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 관보고시 알림, 광역도시철도과-3772(2016.11.3.)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3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계획공정률 및 실행공정률】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공정률	2.4	12.8	33.6	62.7	87.9	99.9	100.0		
실행공정률	5.6	11.6	17.6	26.6	39.1	55.9	72.8	95.9	100.0

- 동 사업은 '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에도 '17년 ~ '18년까지 5,544억 64백만원(시비 3,337억 37백만원, 국비 2,207억 27백만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

【지하철 9호선 3단계 시비 및 국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추경)	2017년	2018년	
합 계 (A)	1,470,511	30,000	43,826	78,338	78,941	117,339	163,939	219,666	148,598	35,400	314,400	240,064
시 비	882,307	30,000	24,496	62,338	44,991	27,142	65,139	134,766	124,298	35,400	281,000	52,737
국 비	588,204	0	19,330	16,000	33,950	90,197	98,800	84,900	24,300		33,400	187,327
사업비 누계(B)	30,000	73,826	152,164	231,105	348,444	512,383	732,049	880,647	916,047	1,230,447	1,470,511	
시비 누계	30,000	54,496	116,834	161,825	188,967	254,106	388,872	513,170	548,570	829,570	882,307	
국비 누계	-	19,330	35,330	69,280	159,477	258,277	343,177	367,477	367,477	400,877	588,204	
투자율 (C=A/B)	2.0%	5.0%	10.3%	15.7%	23.7%	34.8%	49.8%	59.9%	62.3%	83.7%	100.0%	
매칭비율	시 비	100	73.8%	76.8%	70.0%	54.2%	49.6%	53.1%	58.3%	59.9%	67.4%	60.0%
	국 비	-	26.2%	23.2%	30.0%	45.8%	50.4%	46.9%	41.7%	40.1%	32.6%	4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국비매칭비율(국비:시비 = 40:60)을 유지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비 및 국비 확보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민자)4)(사업별 설명서 p.485)**

- 동 사업은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난 완화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16년 기정예산 660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보조금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적게 편성됨에 따라 11억 78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총사업비 조달계획5)에 따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4%로 가정하여 '16년도 국비 59억 78백만원을 예산편성했으나, 실제 국비 48억원이 예산반영됨6)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우이~신설 경전철 시비 및 국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911,473	12,572	77,439	70,294	82,237	78,969	113,465	280,020	196,477
국 비	96,712	1,197	16,270	15,045	30,000	24,400	4,000	1,000	4,800
시 비	333,048	8,664	57,928	45,922	29,910	19,387	23,179	88,027	60,031
민 자	481,713	2,711	3,241	9,327	22,327	35,182	86,286	190,993	131,646

- 동 사업은 '16년 9월 공정률 90.28%에 이르고 있으나, '17년 7월 개통 예정으로 사업지연됨에 따라 국비 48억원 중 1/4분기 16억 80백만원만 교부받고 31억 20백만원을 아직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실적,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잔여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일정관리 및 사업지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동 사업은 당초 '09년에 공사착수하여 '16년 11월에 개통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2016년 11월 현재 공사 마무리 및 시운전 중에 있어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5)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09.4.9., 부록4(총사업비) 3. 총사업비 조달계획  
 6)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우이-신설 경전철)알림, 재정담당관-1111(2016.3.24.)

#### IV. 명시이월

#### □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498, p.1499)

- 서울시는 '16년도 사업 중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올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7개 사업 1,120억 30백만원<sup>7)</sup>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sup>8)</sup>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17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명시이월내용별이월액】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6 예산액	2017 이월액(안)	이월사유
<b>합 계</b>		<b>153,065</b>	<b>112,030</b>	
<b>교통사업특별회계</b>		<b>22,380</b>	<b>13,732</b>	
1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15,380	6,732	- 지장물 이설 및 국유지 사용 협의로 인한 이월 - 시스템분야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 지연
2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7,000	7,000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b>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b>		<b>35,900</b>	<b>23,253</b>	
3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24,400	11,753	- 지장물 이설 및 국유지 사용 협의로 인한 이월 - 시스템분야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 지연(국비 11,753백만원)
4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11,500	11,500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국비 47억원 이월 사용 예정)
<b>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b>		<b>94,785</b>	<b>75,045</b>	
5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7,880	7,440	국토교통부의 진접차량기지 기본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및 보상 지연
6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	64,831	45,744	공사지연되어 '17.7월 준공예정'으로 '16년도 집행잔액 이월
7	신림선경전철 건설(민자)	22,074	21,861	금년도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보완하여 11월 실제 공사 착공 예정으로, 일정상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움(국비 5,280천원)

7) 교통사업특별회계 2개 사업 137억 32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개 사업 232억 53백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3개 사업 750억 45백만원

8)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